

울산지방법원 2019. 3. 28 선고 2019나23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19. 3. 28 선고 2019나234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18. 11. 21 선고 2018가단5699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영진

담당변호사 지현진

피고, 항소인1. E

2. G

변론종결 2019. 3. 14.

판결 선고 2019. 3. 28.

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. 11. 21. 선고 2018가단5699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1. 5. 28. 접수 제92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28분의 7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기존의 제1심에서의 주장 외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정재우

판사이규봉

판사김혜인

별지